

# Muan Web Contents

2021년 09월 26일 04시 28분



# 목차

목차	2
매매시	3
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?	3
절차요약	3
신청인	3
시·군구청	3
금융기관	3
참고사항	4
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	4

매매시	분양시	증여시	상속시
-----	-----	-----	-----



**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?**

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,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을 등기권리자, 매도인을 등기의 무자라고 합니다.

서류명	상세	다운로드
매매계약서 작성 / 매매계약서 검인 부동산(주택)거래 신고	시 · 군 · 구청 토지사무 부서	 <a href="#">hwp 다운로드</a>
등기신청 첨부서류 발급 및 취득세 납부	시 · 군 · 구청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납부	
주택채권매입	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와 매입기준	 <a href="#">hwp 다운로드</a>
등기신청서작성	부동산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신청서 작성 안내를 참조하여 작성	 <a href="#">hwp 다운로드</a>
등기소에 출석 등기 신청서류제출	매도인, 매수인 신분증 지참 직접 등기소에 출석, 신청 (위임의 경우 위임장 첨부)	
등기부등록 확인 등기필증 수령	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(www.iros.go.kr)에서 등기필 확인	

**절차요약**

**신청인**

신청서(위임장), 등기필증, 부동산매매계약서, 매매목록

**시 · 군구청**

- 부동산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시 · 군 · 구청 방문, 검인 또는 주택거래(실거래)신고하고 신고필증 교부받음
-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함
- 검인신청 (계약서 원본1통, 사본 2통을 제출)
- 시 · 군 · 구청에서 취득세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취득세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‘취득세영수필 확인서만 신청서의 취득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.

**금융기관**

주택채권, 증지매입

## 참고사항

-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반대급부일(잔금지급일 또는 취득일)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.
  - 신청한 등기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므로 등기 권리증을 발부 받고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
- 

## 등기신청서류편철순서

신청서, 취득세영수필확인서, 등기수입증지, 위임장, 인감증명서, 주민등록표등(초)본, 대장등본, 매매계약서,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, 매매목록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

---

COPYRIGHT © MUAN-GUN. ALL RIGHTS RESERVED.

MUAN

# Web Contents

 무안군